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권한중 일부권한을 조정하고, 시유재산 대장 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중 5급 이하 지방공무원(일반직)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, 일부권한을 정비함(안 별표 2).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시유재산(하천, 제방, 구거)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(안 별표 3).
- 다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(안 별표 3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관련부서 및 자치구와 합의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09. 3. 28. ~ 4. 16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운영지원과란 제2호·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운영지원과	2.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방연구직에 대한 다음 권한 가. 휴직 및 복직 나. 보직 및 전보 (4급 상당 직위 지방연구관은 제외) 다. 징계의결요구 라. 호봉 확정 및 승급 3. 별정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 가. 임용 (신규임용, 전직, 전보, 파견근무, 승진임용, 직권면직, 휴직, 복직, 직위해제, 강임, 정직, 파면 및 해임) 나. 보직 다. 호봉 확정 및 승급 라.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마.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·제63조·제65조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5 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·제26조 ·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의2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 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·제27조·제29조의2·제30조의2·제30조의4·제38조·제62조·제63조·제65조·제65조의2·제65조의3·제65조의4·제70조 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6조 · 「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5 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 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 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 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2·제32조 	상수도사업 본 부 장

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4호가목 근거법령란중 “ 「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”으로 한다.

별표 3 생태하천사업단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비고
생태하천사업단	4. 사유재산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(하천, 제방, 구거에 한함)	·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4조 · 「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5조·제6조	구청장	

별표 3 운송주차과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·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비고
운송주차과	7.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8. 시외·고속버스 정류소 지도·감독 9.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	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 ·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3조 제2항	구청장	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2]				[별표 2]			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운영지원과	2.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	상수도사업 본부장	운영지원과	2.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방연구직에 대한 다음 권한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 조·제63조·제65조	상수도사업 본부장
	가. 휴직 및 복직	· 같은 법 제6조·제63 조·제65조			가. 휴직 및 복직		
	나. 보직 및 전보	· 같은 법 제30조의5 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·제26조		나. 보직 및 전보 (4급 상당 직위 지방연 구관은 제외)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·제26조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 의5	
	다. 징계의결요구	· 같은 법 제69조		다. 징계의결 요구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·제26조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	
	라. 근무성적평정	· 같은 법 제76조		라. 호봉 확정 및 승급	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	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	
	3.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 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 조·제29조의2·제30 조의4·제38조·제62 조·제63조·제65조의 3·제70조		3. 별정직 및 기능직 지방 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· 제27조·제29조의2·제30 조의2·제30조의4·제38 조·제62조·제63조·제 65조·제65조의2·제65조 의3·제65조의4·제70조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6조	
	가. 임용 (별정직 및 기능직 공 무원 신규임용, 승진임 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 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파면 및 해임)	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· 제27조·제29조의2·제30 조의2·제30조의4·제38 조·제62조·제63조·제 65조·제65조의2·제65조 의3·제65조의4·제70조				가. 임용 (신규임용, 전직, 전보, 파견근무, 승진임용, 직 권면직, 휴직, 복직, 직 위해제, 강임, 정직, 파면 및 해임)
	나. 보직	· 같은 법 제30조의5 ·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7조		나. 보직	·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 의5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	
	다. 호봉 확정 및 승급	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		다. 호봉 확정 및 승급	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	·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	
	라.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	·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9조		라.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9조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9조	
	마. 근무성적 평정·확인	·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의2		마. 근무성적 평정 및 승 진후보자 명부 작성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2·제32조	·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2·제32조	

현행	개정안
----	-----

[별표 3]
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기업지원과	4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~ 다. (생략)	· 「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	구청장
생태하천사업단	<u>〈신설〉</u>		
운송주차과	7.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<u>〈신설〉</u> <u>〈신설〉</u>	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	

[별표 3]
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기업지원과	4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	·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2항	구청장
생태하천사업단	4. 사유재산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(하천, 제방, 구거에 한함)	·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4조 · 「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5조·제6조	구청장
운송주차과	7.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8. 시외·고속버스 정류소 지도·감독 9.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	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 ·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3조제2항	

관 계 법 령

【 지방공무원법 】

- 제6조 (임용권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"임용권"이라 한다)을 가진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,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

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】

- 제18조 (운행정지명령 등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**제13조**에 따른 검사 또는 **제13조의2**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.
1. **제13조제1항**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
 2. **제13조의2제1항**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
 3. **제17조제1항**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】

- 제44조 (대장과 실태조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**제5조**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·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.

- ②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·조사기간·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【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】

제5조(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

제6조(실태조사)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재산의 관리상태
2. 사용·대부료 수납여부
3.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
4.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
5. 원상변경 여부
6.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
7. 그 밖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재산관리관은 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,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1.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
2.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
3.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
4.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
5.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

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】

제3조 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)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관장한다. 다만,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,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. <개정 2008.12.2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안에 노선의 기점(기점)과 종점(종점)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,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 (영업소 등의 관할관청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관장한다.

1. 영업소
2. 정류소
3. 차고
4. 운송부대시설
5. 여객자동차터미널

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·수탁, 사업의 양도·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·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, 관계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21조 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)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
2.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)으로 선출된 경우
3. 「도로교통법」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(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)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

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
 - 나. 진단서(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)
2.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운전경력증명서
 - 나.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
 - 다.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
 - 라. 반명합판 사진

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,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,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대리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

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】

제43조(재정지원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,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공동차고지 건설
2. 물류정보화 사업
3. 낡은 차량의 대체
4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과 개선
5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는 운수사업자(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유류(유류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·지급방법·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.

1.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주행세

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

심 사 보 고 서

2009년 5월 19일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4월 28일
3. 상 정 일 자 :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3차 행정자치위원회(2009. 5. 19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관 장시성)

1. 제안이유

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권한중 일부권한을 조정하고, 사유재산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중 5급 이하 지방공무원 (일반직)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, 일부권한을 정비함(안 별표 2).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사유재산(하천, 제방, 구거)의

대장관리 및 실태조사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
(안 별표 3).

다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
(안 별표 3).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박춘용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 등의 권한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 시유재산의 대장관리 및 실태조사, 시외·고속버스 정류소 지도·감독,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며,

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○ **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**

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만 위임된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권한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,

신규 위임사무의 경우 자치구와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며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